

가정용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적격 미국 비시민

적격 미국 비시민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입니다.

- 이민국적법(INA)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 받은 비시민, 또는
- INA 제 208 조에 따라 망명이 허용된 자, 또는
- INA 제 207 조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난민, 또는
- INA 제 212(d)(5)조에 따라 최소 1 년 동안 미국으로 가석방된 자, 또는
- 1997 년 4 월 1 일 이전에 발효된 INA 의 제 243(h)조에 따라 추방이 보류된 외국인 또는 INA 의 제 241(b)(3)조에 따라 추방이 보류된 자, 또는
- 1980 년 4 월 1 일 이전에 발효된 INA 의 제 203(a)(7)조에 따라 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자.
- 1980 년 난민교육지원법(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 of 1980) 제 501(e)조에 정의된 쿠바인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, 또는
- 특정 학대 피해자인 비시민 또는 8 U.S.C. 1641(c)에 정의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비시민, 또는
- 이민 국적법 제 289 조 규정을 적용받는 캐나다 출생 북미 인디언, 또는
- 인디언 자기결정권 및 교육 지원법(25 U.S.C. 5304(e)) 제 4(e)조에 정의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연방 정부 인정 인디언 부족 구성원, 또는
- 1996 년 개인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(8 U. S. C. 1612(a)(2)(A)(V))의 제 402(a)(2)(A)(i)(V)조에 설명된 아메라시안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자, 또는
- 특정 흐몽이나 하이랜드 라오스 부족 일원, 또는
- 미국 군대에서 훈련을 위한 복무 외의 현역 군 복무, 또는 그 배우자,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배우자 또는 그러한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적격 미국 비시민인 경우 그러한 미국 비시민의 미혼 피부양 자녀, 또는

- 자격을 갖춘 미국 비시민으로서 참전용사이고 (1) 소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미군에서 제대하거나 (2) 뉴욕주 행정법(New York State Executive Law) 제 350 조에 정의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, 군대에서 나쁜 행동이나 불명예스러운(소외에 의한 것이 아님) 것 이외의 이유로 제대하거나 (3) 뉴욕주 행정법 제 350 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LGBT 퇴역 군인이며 나쁜 행동 또는 불명예스러운(소외에 의한 것이 아님) 것 이외의 이유로 미국에서 제대한 개인 또는 그 배우자,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 배우자 또는 미혼 피부양 자녀(이러한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유자격자인 경우), 또는
- 인도주의적 아프가니스탄인 가석방 대상자로서 이민 국적법 제 212(d)(5)(A)조에 따라 (1) 2021 년 7 월 3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되었거나 (2) 2022 년 9 월 30 일 이후 미국으로 가석방된 자 및: (a) 2021 년 7 월 3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 사이에 가석방된 아프가니스탄 피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, 또는 (b) 2021 년 7 월 3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 사이에 가석방된 부모 비동반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, 또는
- 개정된 2000 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(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)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증명서 또는 자격 통지 서한을 받은, 심각한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, 또는
- 인도주의적 우크라이나인 가석방 대상자로서 이민 국적법 제 212(d)(5)조 또는 8 U. S. C. 1182(d)(5)에 따라 (1) 2022 년 2 월 24 일부터 2023 년 9 월 30 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되었거나 (2) 2023 년 9 월 30 일 이후 미국으로 가석방된 자 및: (a) 2022 년 2 월 24 일부터 2023 년 9 월 30 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된 우크라이나 시민이나 국민 또는 직전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, 또는 (b) 2022 년 2 월 24 일부터 2023 년 9 월 30 일 사이에 미국으로 가석방된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또는 국민이었던 부모 비동반 자녀의 부모, 법정 보호자 또는 주 간병인, 또는
- 이민 국적법 제 101(a)(27)조 또는 2009 년 아프간 동맹국 보호법(AAPA) 제 602(b)(1)조/2006 년 국방수권법(NDAA) 제 1059(a)조에 따라 특별 이민 지위를 부여 받은 이라크 및 아프간 국민.